급용위원회	보 도 참 고 자 료					はみなり
이 급용감독일	보도	배포 시부터 보도가능		배포	2020. 5. 6.(수) 증선위(14:00) 의결 후	पांध्येन
책 임 자	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 안 창 국(02-2100-2601)		담 당 자		김 민 석 사무관 (02-2100-2518)	
	금감원 공시심사실장 김 진 국(02-3145-8420)				김 대 범 팀 장 (02-3145-8470)	

제 목 : 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

- □ 중권선물위원회는 2020. 5. 6. 제9차 정례회의에서
 - 비상장법인 ㈜모헤닉플래닛에 대하여 소액공모공시서류, 증권 신고서 및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,
 - 前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㈜썬테크놀로지스에 대하여 정기보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7월을 부과하고,
 - 前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㈜에프티이앤이에 대하여 정기보고서
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3월 부과 조치를 하였습니다.
- □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**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** 및 **투자자 보호**를 위해 **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**할 방침입니다.
 - < 붙임 > 위반자별 위법사실

<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>

☞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/제보 전화 (02-2100-2543)

☞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

- 인터넷: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(http://www.cybercop.or.kr) 접속

- 전화: 1332 또는 02-3145-5583, 5599, 5568, 5593

☞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

- 인터넷: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(http://stockwatch.krx.co.kr) 접속

- 전화 : 1577-0088

"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"



 ☞ 본 자료를 인용 보도 할 경우 출처를 표기 해 주십시오.
 http://www.fsc.go.kr

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@korea.kr



위반자별 위법사실

위반자	위반내용	조치	
	-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	- 과태료 17,500,000원	
㈜모헤닉플래닛	-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	- 과징금 12,300,000원	
	-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	- 과징금 40,000,000원	
(조)ผ리 그노크기 시	-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	- 증권발행제한 4월	
(주)썬테 <u>크</u> 놀로지스	-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	- 증권발행제한 3월	
㈜에프티이앤이	-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	- 증권발행제한 3월	

- □ ㈜모헤닉플래닛은 2016. 8. 8. 40인에게 4억원의 보통주를 모집하면서 과거 6개월 이내에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가 총 63인, 총 발행금액이 5억원에 해당되나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,
 - 2016.11.9. 219인에게 3.5억원의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과거 1년 동안 신고서 제출 없이 모집한 금액이 11억원으로 모집에 해당되고
 - 2017.3.25. 22인에게 5억원의 보통주를 모집하면서 과거 6개월 이내에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가 총 53인, 총 발행금액이 11.5 억원에 해당됨에도 총 2회의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,
 - 2019년 3분기 분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

- □ ㈜썬테크놀로지스는 2017년 반기보고서(제출기한 '17.8.29.)를 8영업일 경과한 2017.9.8.에 지연제출하였으며, 2019년 1분기 분기보고서 (제출기한 '19.5.15.)를 제출하지 않았고,
 - 2019.12. 9. 이사회에서 2018년말 연결기준 자산총액(329억원) 대비 60.7%(200억원)에 달하는 사업권 양수를 결의하였으나, 주요사항 보고서(자산양수도)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
- □ ㈜에프티이앤이는 2018년 반기보고서(제출기한 '18.8.14.)를 6영업일 경과한 2018.8.23.에 지연제출한 사실이 있음